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24

발의연월일 : 2021. 4. 16.

발 의 자: 김철민ㆍ이해식ㆍ신동근

박상혁 • 박찬대 • 송옥주

유동수 · 김민철 · 이정문

이병훈 • 박 정 • 윤후덕

안민석 · 민형배 · 백혜련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의 유통현황, 생 활방사선 취급 시설 주변의 방사능 농도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실태조사는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물질의 유통, 관련 시설 주변의 방사능 농도 등에 관한 조사로서, 생활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과 관련되는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아니라 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생활주변방사선에 장기간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업무 종사자, 승무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 노출과 질병 간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과 관련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승무원에 대하여 생 활주변방사선 관련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주변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제2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조치"를 "조치(승무원에 대한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건강진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 주변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이하 "건강영향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1. 워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
- 2. 승무원
- 3.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같은 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 2.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 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 3.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 및 사인 (死因) 등에 관한 자료
- 4.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자료
-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 6.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
- 7.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③ 건강영향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안 제18조(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제18조(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① ~ ③ (생 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 ④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분 석 결과를 반영하여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치(승무원에 대한 생활주변방 사선 관련 건강진단을 포함한 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생활주변방사선 건강 영향조사) ① 원자력안전위원 회는 생활주변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생활 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이하 "건강영향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 2. 승무원

- 3.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생활주변방사선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에 따른 요양급여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

 한 자료
- 2.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관한 자료
- 3.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 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 및 사인(死因) 등에 관한 자 료
- 4.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자료

-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 6조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 6.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 른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
- 7.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③ 건강영향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